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78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김선민 · 서왕진 · 신장식
황운하 · 백선희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박성준
정춘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뱅뱅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우선수용병원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환자가 복수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하 “우선수용병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선수용병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 제목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을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0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해당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

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0조의6(우선수용병원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환자가 복수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하 “우선수용병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선수용병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② (생략)	제63조(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제30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해당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死 傷)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 가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 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 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	---